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3구합4129 취등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대한 취득세 5,250,260원 및 등록세 13,191,190원, B 차량에 대한 취득세 1,893,500원 및 등록세 4,757,440원, C 차량에 대한 취득세 3,739,290원 및 등록세 9,393,610원, D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68,790원 및 등록세 11,226,400원, E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46,300원 및 등록세 11,173,800원, F 차량에 대한 취득세 7,055,990원 및 등록세 17,725,900원, G 차량에 대한 7,020,48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및 등록세 17,642,850원, H 차량에 대한 취득세 2,791,470원 및 등록세 7,013,990원, I 차량에 대한 취득세 2,604,620원 및 등록세 6,54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4.경부터 자동차 리스, 렌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07. 6. 1.부터 2007. 11. 19.까지 J 외 8인(이하 '리스이용자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 자동차 9대(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 딜러 K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 등록업무를 위임하였고,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각 9,090,909원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redacted]시 [redacted]청장은 2013.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중 1 내지 5번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시 위조된 법인장부(계정별 원장)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이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13. 10. 24.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계약일자	취득일자	리스이용자	차량번호	신고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1	2007. 6. 1.	2007. 9. 3.	J	A	9,090,909	150,000,000	5,250,260	13,191,19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2	2007. 7. 24.	2007. 9. 14.	㈜알로에여행사	B	9,090,909	60,000,000	1,893,500	4,757,440
3	2007. 6. 7.	2007. 10. 8.	L	C	9,090,909	110,000,000	3,739,290	9,393,610
4	2007. 7. 9.	2007. 10. 24.	M	D	9,090,909	130,000,000	4,468,790	11,226,400
5	2007. 11. 19.	2007. 11. 22.	N	E	9,090,909	130,000,000	4,446,300	11,173,800
6	2007. 5. 14.	2007. 10. 24.	O	F	9,090,909	200,000,000	7,055,990	17,725,900
7	2007. 7. 12.	2007. 11. 22.	㈜씨엠에이치 홀딩스	G	9,090,909	200,000,000	7,020,480	17,642,850
8	2007. 9. 3.	2007. 11. 23.	P	H	9,090,909	85,000,000	2,791,470	7,013,990
9	2007. 8. 23.	2007. 11. 30.	Q	I	9,090,909	80,000,000	2,604,620	6,544,540
							39,270,700	98,669,7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3,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딜러인 K에게 자동차 등록업무만을 위임하였고, 자동차세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취·등록세 납부업무를 K에게 위임한 것은 원고가 아닌 리스이용자들이다. 그런데 K은 브로커 R, 자동차등록대행업자 S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법인장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원고에게는 실제 취득가액이 기재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신고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점, 원고는 K에게 기망당하여 과소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수임인인 K이 위임인인 원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실제 취·등록세를 부담하는 리스이용자를 위해 과소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 점에 있어서는 위임인의 이행보조자나 피용자로 볼 수 없는 점, 법률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수임인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과소신고·납부의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 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K이 위조된 법인장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리스이용자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련된 재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넘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등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와 리스이용자들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상당액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취·등록세 신고업무 자체를 리스이용자에게 위임한 것인지, 원고가 관련 세금을 부담한 경우 향후 리스이용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등록세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원고이고, 실제로도 원고 명의로 취·등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리스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였고, 리스이용자들이 이를 다시 K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는 납부의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관련 업무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납부의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납부의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복이행보조자가 행한 부정한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취지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④ 원고는 1989. 10. 4.경부터 자동차 리스, 렌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의 제반 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취득가액은 6,000만 원에서 2억 원(평균 127,222,222원)인데, 피고에게 신고한 가액은 그 4.5%에서 15%에 불과한 9,090,909원에 불과하다.

⑥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갑 제5호증)은 수기로 작성된 것이고, 취급자인 란에 날인이 없는바, 이 사건 1 내지 6 자동차에 관한 영수증 하단에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1, 2, 8 자동차의 경우 원고 장부상 가액과 위 영수증상 과세표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1] 등 원고가 위 영수증이 허위임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위 각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일혁

판사 김연수

---

1) 이 사건 1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1억 5,000만 원, 영수증상 과세표준액은 7,000만원이고, 이 사건 2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6,000만 원, 영수증상 과세표준액은 7,000만 원이며, 이 사건 8 자동차의 장부가액은 8,500만 원, 영수증상 과세표준액은 9,000만 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판사 김나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8-27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끝.